

|   |  |            |  |   |  |
|---|--|------------|--|---|--|
|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          | 수도권매립지 종료  |   |  |
|   | 배포일자<br>2022년 1월 13일(목)<br>총 3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<br>환경특별시 인천 |  |
| 담당 부서<br>법무담당관  | 담 당 자<br>• 법제팀장<br>• 담당자   | 강의환<br>김수연 | ☎440-2281<br>☎440-2285   |   |  |
| 사진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  |  |
| 보 도 시 점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|  |   |  |

## 올해,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

-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「주민e직접플랫폼」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-
- 주민조례 발안, 주민투표, 주민소환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-
- '22년부터 지방정부 규칙에 대한 제·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도 가능 -

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, 청구인 서명,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.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는 주민청구조례, 주민투표청구,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‘주민e직접플랫폼(www.juminegov.go.kr)’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 주민청구조례는 1월 13일부터,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

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, 플랫폼을 통해 △주민조례발안청구 △주민투표청구 △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시, 군·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

번에 확인이 가능하다.

특히 1월 13일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1.10.19 제정) 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.

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. 조례의 제정이나 개·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.

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.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·개·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.

한편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.

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, 우편, 전자메일(incheonleg@korea.kr)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

수 있다.

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([www.elis.go.kr](http://www.elis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“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면서 “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, 공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”을 당부했다.